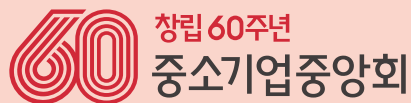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목 차



발 제 문

[발제]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

송창석 (송실대학교 교수) 1

토 론 문

□ 좌장 :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토론 ①] 김남근 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19

[토론 ②] 유병조 회장 (창호커튼월협회) 27

[토론 ③]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33

[토론 ④] 유환익 산업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39

[토론 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공정거래위원회) 45

[토론 ⑥]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49

질의응답

주제발표1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

송 창 석 | 송실대학교 교수

합리적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방안

2022.05.17.

송창석

송실대 경영학부
tongtang@ssu.ac.kr



목 차

납품가격 조정의 필요성

○

납품가격 조정방식의 비교

○

납품단가 연동제 설계

○

납품단가 조정제도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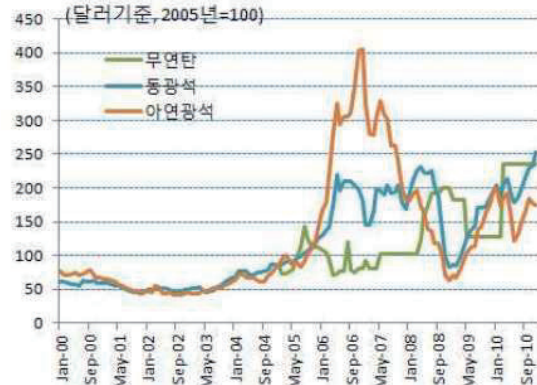
납품가격 조정의 필요성

3

I. 납품가격 조정의 필요성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 2008년 금융위기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원자재 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2009년 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구리는 150%, 원유는 140%, 알루미늄은 90%씩 올랐다 (조선일보 2010.5.1.)



출처: 한국은행 4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대책

-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 이명박 대통령, 중소기업청은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를 추진하였으나
 -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고,
 - 소비자,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며,
 - 해외 아웃소싱으로 국내 산업이 공동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2009.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국회 통과
- 2011.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정협의 신청을 대행하도록 함
- 2021.4. 대행협상자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
- **2022년 대선후보들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 약속**
- **김경만 의원(2021.11.), 한무경 의원, 김정재 의원(2022.4.) 등이 납품단가연동제법 대표 발의**

원자재가격 동향



원자재가격 동향



원자재가격 급등과 위기관리전략

- **코로나 19에 의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주요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중소기업연구원 2022.4.)
 - 2022년 3월 기준으로 대부분의 원자재가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향후 예상되는 불규칙 변동 → 반복주기의 단축, 변동폭의 확대 우려**
 - 자원무기화, 보호무역주의, 공급망 진영주의
- **원자재 가격 변동 양상이 '협의조정'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변**
 - 공급망 붕괴 초래 → 적절한 타이밍 필요
 - 납품가격 인상 문제가 아니라 위기 관리능력, 복원력 관점 필요

납품가격 조정방식의 비교

9

II. 납품가격 조정방식의 비교

가격 설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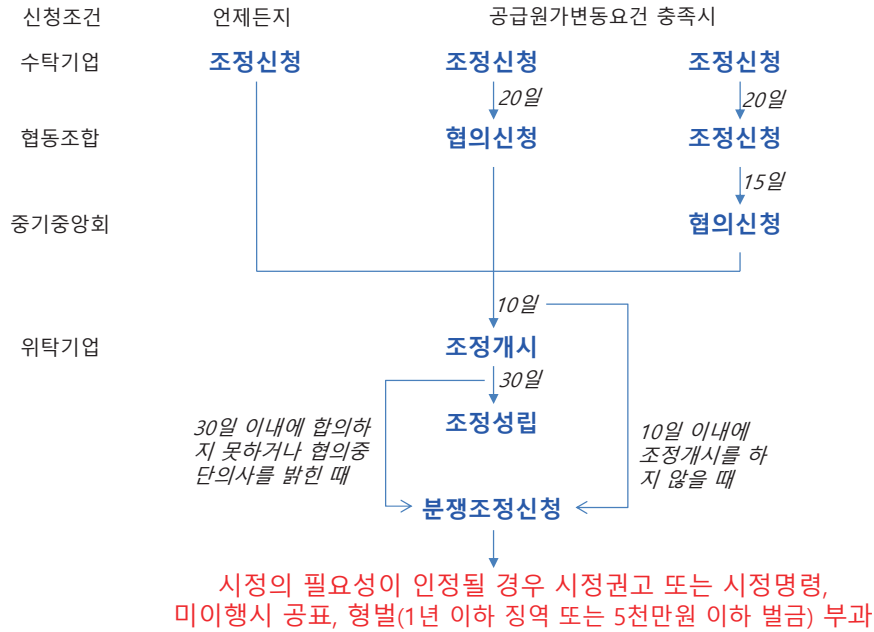
- 고정가격제
 - 사입, 선물계약
- 협상 조건부 고정가격제
 - 납품단가 인하
 -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 납품단가 연동제
 - ???
 - 납품가격 원가연동제
- 도착가격제
- 원가가산가격제



- 협의주도권은 어디에 있는가?
- 계약 후 협상이 가능한가?

10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
- 납품대금 인상 요청비율 83,972업체 중 4.0% (공정거래위원회 2021.12.)
 - 협동조합을 통한 신청 건수는 도입 후 0건 (전자신문 2022.5.3.)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시 반영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조사)
 - 미반영: 43.0~45.8%
 - 일부 반영: 43.2~47.9%
 - 전부 반영: 6.2%~13.8%
-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어려움
 - 협상주도권은 위탁기업에게 있다
 - 신청하면 불이익을 당한다
 - 조건을 완화해도 대협협상은 어려울 것이다
 - 조정협상의 결과에 불만이다

납품단가 연동제

- 원자재 가격 (또는 원가) **변동시** 별도의 요청 없이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
 -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도급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즉시 인상해주는 제도 (2022.3.23. 대한전문건설신문)
 - 대기업이 원자재 비중이 높은 물품의 제조·생산을 중소제조기업에 위탁하는 경우 원자재 가격과 납품대금을 연동하도록 한 제도 (전기신문 2021.12.13.)
 - 원부자재 가격 변화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제도 (전자신문 2022.5.2.)
 - 한무경 의원, 김정재 의원
- 원자재 가격 (또는 원가) **상승시** 별도의 요청 없이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
 -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오른 만큼 납품단가도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디지털데일리 2022.5.3., KBS뉴스 2022.5.2.)
 - 주요 원자재 값이 오르면 원청업체가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제도 (한겨레 2022.2.10.)
 - 김경만 의원

납품단가 연동제와 조정협의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	납품단가 연동제
정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 이 불가피한 경우 조정을 신청	원자재 가격 상승시 별도의 요청 없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절차	계약 → 원가상승 → 신청 → 협의/수용	계약 → 원가상승 → 단가 인상
발동 조건	직접 신청시 조건 없음 협동조합 통한 신청시는 조건이 필요	원자재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때
신청	원가 상승시 수탁기업이 요청	없음
협의	수탁기업이 자료를 제시하면 상호협의	수탁기업의 자료제시와 위탁기업의 확인
법적 강제성	법적 제재 조정협의 불발시 시정명령, 형벌 등	법적 의무 + 법적 제재 계약서 작성시 법적 의무 발생 가능성
중소기업의 인식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사후 지원 (온정적)	정당한 위험분담 요구 (손실보상)

현대자동차 원자재가격 조정



출처: <http://winwin.hyundai.com/coportal/> 15

납품단가연동제 논란

- **시장경제원칙 훼손**
 - 납품단가연동제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와 마찬가지로 시장실패 보안을 위해 필요함.
 - 납품단가연동제 → 시장자율성 저해 vs. 시장실패 보완
- **혁신 저해**
 - 현재 가혹한 납품단가 상황에서는 혁신이 어려움. 급격한 원가상승요인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생태계 파괴적 악순환으로 혁신이 소멸할 것임.
 - 연동제는 혁신을 통해 원자재가격 상승을 흡수한 중소기업에게 유리
- **소비자가격 상승**
 -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범위에서 위탁기업, 수탁기업, 소비자가 위험분담

납품단가연동제 논란

- **원자재 가격 하락시 연동제 적용 여부**
 -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수탁기업 보호가 목적
 - 기존의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고려하여 적용 여부를 파악할 것
- **해외로 공급선 변경**
 - 연동제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포함시키는 설계가 필요
- **기업의 자율성 침해**
 - 논란이 되는 문제들은 납품단가연동제의 문제가 아니며 적절한 연동제 설계로 해결 가능

17

납품단가 연동제 설계

업종
원자재 종류
거래 유형
연동 적용 비율
위험분담 방법

18

적용 대상 업종

- **현재 원자재가격 상승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 영업이익률이 낮을수록 가격변화율은 더 중요함 (Varble 1980)
 - 작은 원가변화에도 위기에 처할 수 있음
- **업종마다 영업이익률이 차이 남**
 -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에서 연동비율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
 - 어떤 업종에 연동제 도입이 시급한지 파악할 수 있음
 - 업종 내 개별기업간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 **특정 업종을 지정할 때 문제점**
 - 관성으로 인해 업종 지정을 폐지하기 어려움

*연동비율: 연동제 적용이 필요한 원자재가격 또는 원가상승율

19

적용 대상 원자재

- **모든 원자재를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운영상의 편의나 명확성을 위해서라면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원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또는
 - 구체적인 원자재 종류를 제시함.
- **원자재 가격 상승의 판단지표로 무엇을 쓸 것인가?**
 - 실제 원자재 가격변동
 - 원자재 가격지수
 - 실제 원자재 구입가격

20

적용 대상 거래 관계

-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는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상태를 극복하기 어려움
- **중소기업간 거래 제외**
 - 조정협의제로 풀 수 있을 것
 - 힘의 불균형으로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을 때 중소기업간 적용도 고려해야
- **중소기업간 거래를 포함**
 - 중소기업 중 을의 입장에 있는 경우 원자재가격 급등하면 보호해야 함
 - 힘의 불균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 후 원자재 가격 인상은 중소기업 구매자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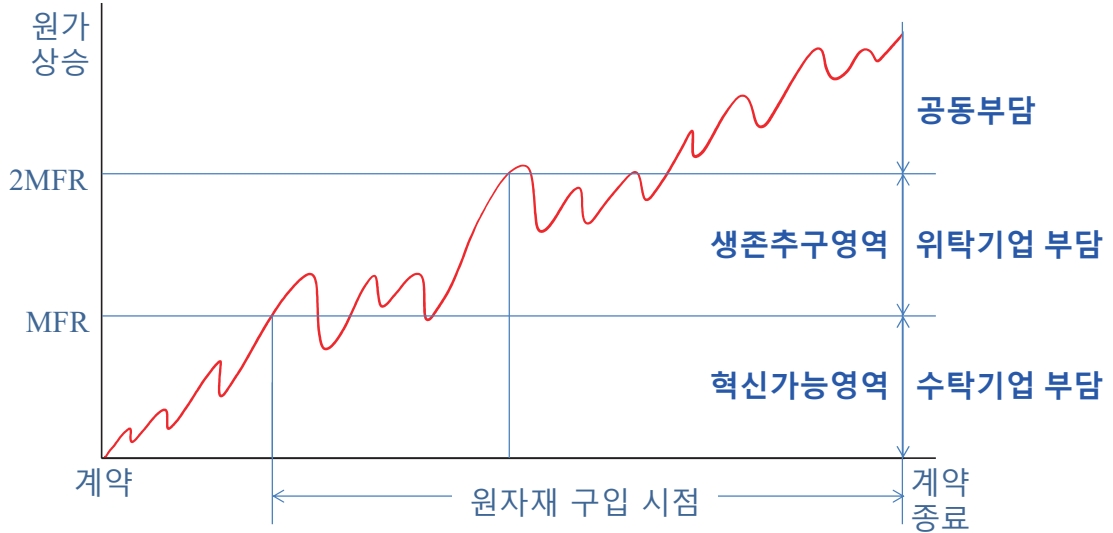
21

연동 비율

- **연동비율(Minimum Fluctuation Ratio : MFR)**
 - 연동제 개시의 기준이 되는 원가상승폭
 -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원가증가율
- **연동비율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업종별 평균 수익률의 반
 - 중소기업 전체 영업이익률의 반 (평균, 중위수 등)
- **연동비율 적용 기준 : 두 가지 어프로치**
 - 원자재 가격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 각 원자재의 가격변화로 인해 원가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 MFR
 - 각 원자재의 가격변동을 반영 : 특정 원자재가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한 경우 = MFR
- **기간별 연동제 적용시는 연동비율 불필요**
 - 예를 들어, 월별, 분기별 원자재가격 변동분 반영시

22

위험분담 방법



- 공급자와 OEM이 50:50으로 부담한다면 소비자부담은 없음(0)
- 혁신: MFR을 영업이익률(=2MFR)에 연계하면 혁신을 자극

23

연동제 : 위탁기업 부담비율(%)

계약 후 원자재가격 상승률(r)			소비자 부담	납품단가 인하	국제 경쟁력
$0 < r \leq MFR$	$MFR < r \leq 2MFR$	$r > 2MFR$			
0	50	0			
0	50	50			
0	100	0			
0	100	50			
0	100	100			
50	50	0			
50	50	50			
50	100	0			
50	100	50			
50	100	100			
100	50	0			
100	50	50			
100	100	0			
100	100	50			
100	100	100			

*MFR: 연동적용비율(Minimum Fluctuation Ratio)

24

위험분담 방법

- **기본 설계**
 -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의 50%(MFR)에 이르는 원가상승분은 수탁기업이 혁신노력으로 흡수
 - 영업이익률의 50% 초과 100% 이하에 해당하는 원가상승분은 위탁기업이 부담
 - 영업이익률을 초과하는 원가상승분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동분담
- **기존 위탁기업의 납품단가인하 관행도 고려해야**
 - 납품단가인하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면 (원가를 인하하는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단가인하가 있었다면) 향후 연동제를 고려할 때는, 납품단가 인하를 고려하여, 위탁기업의 부담비율은 더 높을 것
 - 연동제 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원가상승분을 위탁기업이 모두 부담
- **해외경쟁자**
 - 장기적, 관계적 계약이 아닌 단기 거래적 계약의 경우는 해외경쟁자의 존재로 인하여 최초계약시 납품단가는 수탁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소비자가격 인상**
 - 소비자가격 인상 수용분을 고려하고, 나머지 상승분은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공동 부담

납품단가 조정제도 개선 방향

연동제 실행 방안

연동제 유형	이상적 연동제	현실적 연동제	합리적 연동제
실행 방향	일반적 연동제	급격한 원가상승 충격의 완화	협상력 균형
연동비율 (MFR)	원자재 가격 상승, 하락시 자동 반영	주요 원자재 상승률	업종별 영업이익율을 감안하여 결정
위험 분담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100% 반영	연동기준(증가율)을 넘을 때 상승분을 위탁기업이 100% 부담	연동기준(증감율)을 넘을 때 초과[감소]분을 위탁[수탁]기업이 부담
중소기업간 거래	포함	미포함 당장 해결 어려움	공급사슬 확인하여 포함 여부 결정
계약 후 협상	불필요함	불필요함	허용 가능
조정협의제와 관계	조정협의제와 무관	조정협의제와 결합 급격한 손실증가를 보상	조정협의제를 대체 자율성, 혁신 확보
원자재가격 인상 및 인하	인상, 인하 모두 포함	인상분만 포함	일정 범위를 벗어나는 인상, 인하 모두 포함
시간 범위	-	단기적 해법	장기적 해법

27

연동제와 조정협의제 혼합형

	납품금액 조정 협의 의무제	수정 연동제 (직접협상형)	수정 연동제 (대리협상형)	납품단가 연동제
계약단계	조정 조항	연동제 조항	연동제 조항	연동제 조항
신청주체	수탁기업	위탁기업	위탁기업	없음
조정협의	위탁기업과 수탁기업(대리인)	위탁기업과 수탁기업(대리인)	위탁기업과 협동조합(중앙회)	없음
협의사항	단가인상율	원자재가격 상승률 기업별 보상비율	원자재가격 상승률 업종별 보상비율	원자재가격 상승률 (구입가격 인정)
분쟁조정	납품단가 조정 권고, 명령 등	연동제 시행 권고, 명령 등	연동제 시행 권고, 명령 등	연동제 시행 명령 등

28

연동제와 조정협의제 혼합형

- **수정 연동제 : 직접협상형**
 - 최저보상비율은 협상력 균형을 위한 장치
 - 원자재가격 상승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원자재가격 상승률과 단가인상율을 협상함
- **수정 연동제 : 대리협상형**
 - 납품단가 조정협의회를 열어 매달 위탁기업 대표와 협동조합이 만나 원자재가격 상승률과 단가인상율에 대해 협상
 - 협의회에서 도출된 인상비율은 각 수탁기업의 계약금액에 자동적으로 반영
- **납품단가연동제와 조정협의제는 큰 차이가 없음**
 - 심리적 경계가 존재함
 - 납품대금 연동제를 완화하면 납품단가 조정협의제에 근접

29

결어

- 장기적 갑을 관계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는 한계가 있음
- 원자재가격 급등은 앞으로 더 자주 일어나며, 공급망위기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됨
 - 위기관리능력, 생태계복원력 강화 측면의 접근 필요
 - 현대차 사례로 본 연동제 도입 조건 - 정보, 하락분 포함
- 납품대금 조정협의 의무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는 모두 필요한 정책임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와 납품단가연동제의 역할이 다름
 - 둘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함
- 이들을 잘 운영함으로써 산업생태계를 강건하게 하고, 소비자보호, 기업자율성, 혁신,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임
 - 관건은 대등한 협상력을 갖도록 하여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30



토론 1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방식과 반대논리에 대한 의견

1. 현재 입법 논의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방식과 그 법리적 근거

1)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에 관한 법 개정안¹⁾의 내용

① 납품대금(하도급대금)에서 원자재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²⁾ 납품거래(하도급거래)의 경우

② 위탁기업(원사업자)은 납품거래 약정서(하도급거래 서면)에 원자재 기준가격과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³⁾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와 같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표준약정서 내지 표준하도급 계약서 배포

③ 원자재 기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원사업자)은 가격상승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함⁴⁾

④ 이를 위반한 경우 상생협력법은 과태료⁵⁾, 하도급법은 시정조치⁶⁾를 취하도록 함

2) 현재 제안된 개정안은 납품거래 약정서(하도급거래 서면)의 내용을 법에 의해서 강제로 변동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고 한다)」

2) 하도급대금(납품대금)에서 원자재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21조, 하도급법 개정안 제3조.

3)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21조제1항, 김경만 의원 대표발의 각주 1)의 법 개정안

4) 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 제21조제3항 제1호, 각주 3)의 김정재, 김경만 의원 법 개정안

5) 김정재 의원안은 납품대금 조정분의 2배 이내, 김경만 의원안은 1억 이하의 과태료

6) 김경만 의원 하도급법 개정안

3) 납품거래 약정서에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원자재 기준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 수탁기업(하수급업자)가 약정서에 기재된 조정방법에 따라 추가 납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위탁기업이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임

4) 법리적으로 보면 일정한 원자재가격 상승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납품대금 지급청구권조건부 권리가 발생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임

2. 단발성 계약과 다른 납품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 계약에 대한 “관계적 계약이론”

1) 현대의 계약은 민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매매, 도급 등과 같은 단발성 계약이 아니라 납품거래와 같이 장기 계속적 거래 계약이 많음,

장기 계속적 거래 계약은 계약 체결 시에 납품단가 등 기초적인 계약내용만을 정하고 장래 발생하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보충해 나가는 방식의 거래인 경우가 많음

2)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후 이행의 문제만 남는 단발성 계약과 달리 장기 계속적 거래 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거래 관계를 통해 상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의 인적인 신뢰 관계에 근거하여 상호 유연하게 협력해야 하는 관계에 있음

3) 이러한 단발성 계약을 기초로 발전한 고전적인 계약이론과 대비하여 이러한 장기 계속적 거래관계에 주목하여 발전한 계약이론이 “관계적 계약”이론으로 금융, 고용, 계속적 공급, 국제거래 등 현대적 계약 유형의 법리적 설명에 적합한 이론임. 이러한 관계적 계약관계에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지위가 있다고 봄 (Macneil)⁷⁾.

4) 미국은 정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에는 원자재가격(Raw Material cost)

7) 김현수, “미국에서의 관계적 계약이론-Ian Macneil 이론의 학설사적 지위와 논지를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2권 제4호(2016.2)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immediate adjustment to the unit price for a product)를 규정하고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품·소재 납품거래에서 적용되고 있음. 한국도 Global Standard를 지향하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주기별, 분기별, 협력사 요청시 이러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3.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1) 제안된 입법안들은 정해진 계약을 법에 의해 강제로 변경하는 계약이 아니라 원자재가격 상승의 조건이 발생하면 추가 납품대금청구권이 발생하는 방식

2) 이와 같이 계약체결 후 사정변경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은 다수 있음.

예) 차임증감청구권(민법 제628조), 고용계약의 해지(민법 제661조),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한 차임감액청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3) 판례도 단발성 계약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계속적 법률관계인 계속적 보증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특별해지권을 인정한 예도 있다(대법원 1992. 5. 26. 92다2332 판결)

4) 공공부분의 물품공급계약에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공급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이 법제화 되어 있음

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는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4. 경쟁법적 시각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서

1) 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국가의 경제에 대한 조정역할과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음.

○ 원자재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례적인 폭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위탁 대기업과 수탁 중소기업 사이에 상호 분담하는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방식

○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높은 원자재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었을 때 그 중 일부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이어서 마치 이를 일상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오해하는 안 됨

2) 공정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다는 주장

○ 대·중소기업간 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납품단가가 대기업에 유리하게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결정되면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가 대기업에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함

○ 원자재가격이 폭등하는데도 납품대금이 종전의 납품단가에 기초하여 정해지는 것은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납품단가는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게 됨

○ 따라서 오히려 원자재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유지가 어려운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전 납품단가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일 수 있음.

3)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수입원 다변화 등 원가절감의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는 주장

○ 이미 소재·부품·장비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저임노동력에서 기술과 품질로 이전되었으며, 기술개발과 생산력 향상을 위한 투자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납품단가가 필수적임.

○ 과도한 납품단가 인가로 인한 납품거래 위수탁기업 사이의 건전한 생태계가 파괴되면, 도요타가 부품결함으로 리콜 사태를 겪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조립 대기업도 불량, 품질 저하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됨.

○ 오히려 원자재가격 폭등 등 경제위기 상황마다 그 부담을 수탁기업(하수급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 일터혁신에 투자할 여력을 상실하게 함.

4) 납품대금 인상은 최종 소비재의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피해로 귀결된다는 주장

○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품·소재의 납품가격만이 아니라 인건비, 물류비, 경비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음.

○ 원자재가격에 상승에 따른 부담을 어느 한 경제주체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이념에 반하며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납품 수탁기업만이 아니라 대기업, 소비자 등 여러 경제주체간 분담하는 것이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에 부합하는 것임.

5. 원자재 공급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원자재 공급가격 인상의 불공정 문제에도 대응이 필요

1) 주요 원자재인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은 대부분 공급기업이나 독점이거나 과점이고 공급가격 인상 시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담합행위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공정위의 원자재 공급가격 급격한 인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3) 플라스틱의 원료인 나프타의 경우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롯데케미컬, LG 화학 등으로 과점체제인데, 아무런 통보 없이 월말에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공급받은 원재료를 가공하여 판매한 중소기업들은 이를 판매가격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여 큰 피해를 보고 있음. 따라서 사전에 공급받은 원재료가 어느 시점에 얼마로 가격변동이 되는지를 사전에 예고해 주는 것이 필요함.

석유의 경우 원산지에서 출발하는 유조선에 실은 원유별로 가격이 다르고 수입되는 원유가격에 연동하여 나프타 가격 등을 결정하므로 적어도 유조선이 원산지에서 출발하는 2-3개월 전에는 해당 원유를 수입하여 가공하여 공급하는 나프타 등의 공급가격을 예고할 수 있음. 그래서 플라스틱 업종의 등의 경우에는 가계예고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요구하고 있음

4) 원재료 가격은 대량으로 공급받는 경우 낮아질 수 있고 대량으로 공급받는 경우 국내 업체의 가격이 비쌀 경우 해외에서 수입해 올 수도 있으므로 플라스틱 협회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위의 공동구매 공동가격 협상 등이 보장되어야 함. 즉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교섭권을 부여해야 함.



토 론 2

유 병 조 (창호커튼월협회 회장)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안

1. 창호커튼월 알루미늄 원·부자재 단가폭등

공사주소재인 알루미늄 원자재와 부자재인 스틸파이프 가격이 코로나19와 글로벌공급망 불안으로 2021년1월부터 상승하는중 우크라이나 사태로 2022년5월현재 2배가량 폭등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제조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중소기업들은 원가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품단가 제값 받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대재해 처벌법과 주52시간 여파와 금리인상, 현장근로자 수급문제 등 수많은 비용 상승의 요인이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업계피해현황

공급원가 구성비중이 원자재비 60%, 노무비 30%, 경비 10%인데 공사대금 수금하여 원자재비도 못 주는 상황이며 업체들이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줄 도산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적 파동을 건설사와 국가의 배려 없이는 수습이 어렵다고 봅니다. 저희 중소기업들은 건설사의 선제적 대응을 바라며 있습니다만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로 가격을 묶어놓고 있어 연동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고 있습니다.

3. 연동제 필요성

국내 많은 중소기업들은 넛크래커 구조에 있습니다. 하지만 교섭력이 부족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에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

입니다.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가 존재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보복 조치 우려로 사실상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발적인 상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규정하는 연동제를 조속히 도입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출 처

매일일보 : 중기업계 "납품단가 현실화 담판 짓는다" (22.05.08)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17124>

아주경제 : 아주쉬운 뉴스 中企 숙원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될까요?
(22.04.19.)

<https://www.ajunews.com/view/20220418151154749>

무등일보 : [경제인의 창]납품단가 연동제 (22.05.10)

<http://www.mdilbo.com/detail/Zp2jeM/669095>

한국경제 : 중소기업계 "민주당, 검수완박하듯 납품연동제 먼저 처리를"
(22.05.0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043707i>

학술논문 : 납품단가 연동제의 경쟁법적 갈등 분석-경쟁법 적합성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845490895

디지털타임스 : 현대 GS건설 하청만 받으면 '눈물의 적자' (22.05.09)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51002100151027001

이투데이 : "이달 공사장 섯다운 논의"...민주당 만난 中企 "납품단가 조속히
도입" 호소

<https://www.etoday.co.kr/news/view/2130680>



토론 3

양 찬 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토론 3

양찬회(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중소기업의 경영현실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 필요성

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현황

□ 코로나19·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 지속급등

- 코로나 19바이러스 확산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되어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
- 가장 널리 활용되는 원재료인 펄프, 나프타 가격은 올해 연초와 비교해도 이미 20% 이상 상승하였으며, 철광석 가격도 지속 상승 중

<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 현황 >

구 분	2022년			52주 최저 (\$)	52주 최고 (\$)
	1월(\$)	4월(\$)	상승률(%)		
펄 프	675	840	24.44	655	925
철광석	122	131	7.38	87	233
나프타	743	910	22.48	574	1,023

□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 지속 악화

- 중소기업의 35.9%는 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74.6%는 납품을 통해 발생할 만큼 원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
 - 본회 조사 결과 공급원가 중 원자재 비용이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은 평균 51.2%가 상승한 상황
 - 중소기업의 75.2%가 원자재값 급등으로 경영여건 매우 악화되었으며, 원가상승분 납품대금에 온전히 반영한 중소기업은 4.6%에 불과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경제에도 영향
 - 원자재값 상승분 지속 미반영시 생산량 감축(41.9%), 일자리 축소(32.9%) 등 정상적인 경영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요구는 과거부터 지속**

- 2008년에도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이 지속되어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절실하게 요구
 -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및 인수위 국정과제로 연동제 도입을 채택하였으며, 민주당에서도 총선공약으로 연동제 도입을 추진
 - 국회에서도 문국현, 박선숙, 이정희 의원 등 관련 하도급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가 되어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 다만 '09년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입법과정 중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1년 시행 이후 효과 없을 때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을 검토하기로 논의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주요입장**

찬성의견(중소기업계)	반대의견(대기업계, 공정위)
- 원자재 가격상승 리스크 분담 필요	- 시장경제 위배
- 협상력 차이로 자율조정 불가능	- 소비자 피해
- 국가가 불공정 사적계약 개입 필요	- 담합우려
- 수급사업자가 성장해야 원사업자도 성장	- 해외로 거래처 변경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활용이 어려운 상황**

- 2011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중앙회가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 그러나 조정협의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 등의 보복조치 우려로 인해 인상요청도 쉽지 않아 제도 활성화에 한계
 - * 원재료비(10% ↑ 상승), 노무비(최저임금인상률 ↑ 상승), 잔여경비(3% ↑)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입증
-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인상요청 및 조정협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별도 요청없이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적극 검토 필요

② 바람직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안

□ 합리적인 제도 설계 필요

- (연동조건 계약서 명시) 계약서 작성시 연동 활용 지수, 대상 원자재의 종류, 지급방법 등 위탁·수탁기업이 협의하여 기재
-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 방지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 (연동조건) 계약시점과 비교하여 계약기간 내 한 번이라도 발동조건 충족시 원재료 구입에 소요된 추가금액 지급을 위한 연동제 발동
- (연동요건) 추가금액 지급 조건(원재료 가격 인상비율)은 충분한 검토 필요
- 시장가격 추이분석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논의 필요
- * 예) 「국가계약법」 상 계약대금조정제도 운영에 활용되는 3%
- (연동금액) 수탁기업이 실제 원재료를 구입하는 데 추가로 소요된 금액
- (지급시기) 계약 종료 후 납품대금 지급 시 연동금액 함께 지급
- (제도 실효성 제고) 납품대금 지급시 연동금액 미지급시 이행명령
- 이행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이행력 확보 필요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 ① 사적계약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개입
 - 헌법, 국가에 경제자유 보장과 동시에 규제와 조정역할 부여
 - 국가는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통한 불공정거래 시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 중이며, 납품단가 애로 해결도 국가의 당연한 책무
- ② 소비자 가격 상승 우려
 - 소비자 가격은 인건비, 물류비, 경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소비자 가격 상승의 원인을 연동제에서만 찾으려는 것은 무리한 주장
 - 대기업은 그간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가격 경쟁력 확보해 왔으며, 다른 방향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노력 필요
 -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제품품질 향상되어 소비자 후생 증가
- ③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 저하
 - 현재 중소기업 간 혁신을 통한 경쟁은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더라도 공장을 멈출 수 없어 최소한의 수주라도 확보하기 위한 “덤핑” 경쟁
 -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대될 수 있고 혁신 역량 확보를 통한 경쟁력 제고 가능하며, 제값을 받지 못한다면 혁신을 위한 투자는커녕 기업의 존립도 위태

④ 해외로 거래처 변경

-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계약 후 원자재 가격 등 비용 상승시 납품단가를 자율적으로 조정해주는 문화 형성되어 있는 등 해외 거래처 계약시 해당 국가의 계약문화 등도 고려 필요
- 해외업체와의 거래시 가격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등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상황으로 인한 수급의 불안정성 등도 고려해야 함을 기업들이 경험을 통해 체득
- 국내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음으로써 우수한 제품품질 확보를 위한 혁신 역량을 갖출 수 있게 되어 해외 업체와의 경쟁도 가능

⑤ 하락시에도 적용

- 대기업, 현재도 협상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납품단가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빈번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는 기업 간 자율로 맡겼을 경우 납품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하락에 따른 부분은 기업 간 자율로 맡겨질 영역



토 론 4

유 환 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a solid black border and 21 horizontal dotted lines, serving as a template for text entry.



토론 5

송 상 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a solid black border. Inside the frame, there are 20 horizontal dotted lines spaced evenly from top to bottom, providing a guide for writing.



토 론 6

정 기 환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 토론 6

정기환(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1 현황

- 중소기업계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촉구
- 국회에서도 법 개정 통해 연동제 도입 추진
 - * (발의) 상생협력법 개정안('21.11.3. 김경만의원, '22.4.1. 한무경의원, '22.4.8. 김정재의원), (주요내용) 약정서에 납품대금 조정 방법 기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부과

2 해외사례

- 외국의 경우 민사계약 전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반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사례는 확인하기 어려움
 - 다만, 국가계약 등에 가격조정조항을 도입한 사례*는 존재하며, 미국의 경우 가격연동조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
 - * (미국) 대부분의 주의 주정부, 교통국 등에서 연료, 건설산업 원재료 분야에서 가격조정조항을 도입하여 운영
 - (일본) 우리나라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 운영
 - (독일) 민법에 사정변경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최근 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의 건설계약 시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연동조항을 합의하도록 지시

3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

- ① (표준약관정서 공개) 연동조항이 포함된 표준약관정서를 마련하고 중기부 홈페이지에 공개 및 사용 권고(관련 고시 개정 병행)
 - 표준약관정서를 채택한 기업들에 상생협력법 상 벌점 경감, 실태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율적인 채택을 유도
- ② (시범운영) 대기업으로부터 연동제 도입이 용이한 품목을 제출받아 해당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시범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은 표준약관정서 개선·반영

- 연동제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
- ③ (문화확산)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조정되는 자발적인 상생의 문화가 시장에서 형성 유도
 -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표준약정서 미도입 기업까지 확산 추진
- ④ (의무화 검토) 필요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 대금의 연동 방법을 약정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의무화 검토